

##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 운영 위원회는 노숙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동일한 도전적 주 정부 학업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보유하며,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고, 노숙자로서의 상태를 근거로 낙인찍히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숙 상태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노숙 학생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정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부족한 개인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합니다(42 U.S.C. § 11434a).

1. 주택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타인의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 중, 적절한 대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 거주 중,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에 거주 중, 또는 병원에 버려진 상태임,
2. 인간을 위한 정규 수면용 시설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적 장소인 주요 야간 거주지에 있음,
3.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 중, 및/또는
4. 이주 아동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를 받지 않는 청소년)은 상기 "노숙"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노숙 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숙 상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결정됩니다.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상태는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

교장은 노숙 학생을 위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42 U.S.C. § 11432(g)(1)(J)(ii))로 다음 직원을 지정합니다.

Marni Parsons, VP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교감)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mparsons@brightstarschools.org](mailto:mparsons@brightstarschools.org)  
323-954-9957 내선번호 1004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Charter School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2 U.S.C. § 11432(g)(6)).

1.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 직원, 다른 기관 및 대리자의 봉사 및 조정 활동, 그리고 Charter School에서 관리하는 연간 거주지 설문지를 통해 식별됩니다.
2.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에 등록하고 Charter School에서 성공할 수 있는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습니다.
3. 노숙 학생 및 가족은 헤드스타트법 하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얼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포함), 장애인 교육법("IDEA") C부 하의 조기 개입 서비스, 존재할 경우, Charter School에서 관리하는 기타 모든 유아원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치과 서비스,

-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주택 서비스 및 기타 적절한 서비스로의 위탁을 비롯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습니다.
4.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5. 노숙 아동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공공 통지는 학교, 보호시설, 공공 도서관, 급식소 등 노숙 청소년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주 모이는 장소에, 노숙 청소년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형태로 전파됩니다.
  6. 등록/입학 관련 분쟁은 법률, Charter School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7. 학부모/보호자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해당될 경우 모든 교통 서비스에 대해 완전히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8. 서비스를 제공하는 Charter School 직원은 전문성 개발 및 기타 지원을 받습니다.
  9.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노숙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주 코디네이터, 지역 사회 및 학교 직원과 협업합니다.
  10.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학교에 등록되며, 주 정부가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구축한 것과 동일한 난이도의 주 정부 학업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보유하며, 독립적인 학생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청소년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위한 무료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목적으로 그러한 지위의 확인을 받기 위해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 내 노숙자 교육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목록을 게시합니다. <https://www.cde.ca.gov/sp/hs/>

## 등록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출신 학교인 학생을 즉시 입학/등록시켜야 합니다. "출신 학교"는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다녔던 학교 또는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또한 Charter School은 해당 청소년이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Charter School에 다닐 자격이 있고 Charter School의 역량하에 있으며 Charter School 차터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응할 경우, Charter Sch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노숙 청소년을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노숙 청소년은 수업에 참석하고 과외 활동을 포함한 학교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록(예: 이전 학업 기록, 예방 접종 기록, 기타 필수 건강 기록, 거주 증명서)이 없거나 일체의 노숙 기간 동안 지원 또는 등록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청소년은 즉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전 학교에 즉시 기록을 요청할 것입니다. (42 U.S.C § 11432(g)(3)(C), 교육법 48850(a)(3)(A)항.)

학생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거나 예방 접종 또는 기타 의료 기록이 없을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부모/보호자를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 또는 기록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2 U.S.C. § 11432(g)(3)(C).)

노숙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노숙 상태인 전체 기간 동안 학생의 출신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학년도 중에 영구 거주지를 얻을 경우, 해당 청소년은 해당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출신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허용됩니다.

## 등록 분쟁

입학/등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모든 가능한 항소를 포함하여 분쟁의 최종 해결이 있을 때까지 즉시 입학됩니다(Charter School의 역량하에, 그리고 Charter School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학부모/보호자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입학/등록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받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에게도 소개됩니다.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분쟁 통지를 받은 후 위원회가 채택한 분쟁 해결 및 고발 처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g)(3)(E).)

## 거주지 설문지

Charter School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식별할 목적으로 거주지 설문지를 관리합니다. Charter School은 거주지 설문지가 CDE에서 개발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의 모든 학부모/보호자와 Charter School의 모든 비동반 청소년에게 매년 거주지 설문지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설문지에는 학생이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비동반 청소년으로서 보유하는 권리와 보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설문지는 종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설문지는 Charter School에 등록된 학생의 15% 이상이 사용하는, 영어 이외의 기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또는 비동반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작성 완료된 거주지 설문지를 수집하고 매년 CDE에 등록된 노숙 아동, 청소년 및 비동반 청소년의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법 48851항.)

## 동등한 서비스

각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은 (42 U.S.C § 11432(g)(4))와 같이 Charter School의 다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등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 교통 서비스
-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영어 능력이 제한된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
- Charter School 영양 프로그램

## 교통편

Charter School이 모든 Charter School 학생들에게 교통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Charter School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Charter School에 다니는 각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g)(4).)

Charter School이 모든 Charter School 학생들에게 달리 교통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학생의 출신 학교일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또는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Charter School에 등교하는 노숙 학생에게 교통편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g)(1)(J).) Charter School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은 학생의 상황에 적당하고 적절할 것이나, Charter School은 모든 청소년을 위한 한 가지 교통 수단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과외 활동 자격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은 학교 대항 스포츠 또는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거주 요건을 즉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 및 안전("ASES")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가족 부담 비용을 노숙 청소년인 모든 학생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문성 개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를 포함하여, Charter School의 모든 행정관, 교사 및 직원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다룰 때 필요한 식별, 서비스 및 감수성에 대한 전문성 개발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Charter School이 최소 매년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보낼 것입니다. (교육법 48852.5(c)(2)항.)

## 고등학교 졸업 요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언제든지 Charter School로 편입하는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에서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교육법 51225.3항("추가 졸업 요건")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졸업 요건을 초과하는 Charter School의 일체의 졸업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노숙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이 전학 날짜까지 취득한 학점 수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면제에 대해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Charter School로 전학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학생,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에게 면제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면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과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에게, 면제된 일체의 요건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 계속 재학할 적절한 학생에게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수락하거나 학생이 수강할 자격이 있는 수업의 등록 또는 수업의 완료 능력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를 취소하지 않으며 학생이 이전에 면제를 거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자격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면제에 대한 적절한 학생의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에 대한 적절한 학생의 면제는 해당 학생이 Charter School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또는 학생이 더 이상 노숙 아동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게 된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계속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 대상 학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교육적 권리 보유자, 혹은 학생의 사회복지사나 보호감찰관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 전학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교육법 51225.3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교과 과정 요건을 완료하고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졸업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5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Charter School에서 판단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남을 수 있는 학생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알립니다.

2. 학생과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에게,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학교에 남는 것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립니다.
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4. 학생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학생과 합의하여, 또는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 권리 보유자와 합의하여,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머물도록 허용합니다.

## 교과 과정 수용

Charter School은 일체의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서 노숙 청소년이 만족스럽게 완료한 일체의 교과 과정을 수용합니다.

Charter School은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 다니는 동안 수강한 과정을 부분적으로 완료한 경우 노숙 학생에게 학점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와 협의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간 내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학생이 완료한 과정의 일부를 재수강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과정에서 부분 학점이 부여될 때, 노숙 학생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전체 과정을 계속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동등한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재수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통지

Charter Sch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노숙 학생의 경우, 등록 시점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 통지가 제공되며 Charter School에 등록하는 동안 매년 최소 2회 제공됩니다. 통지서에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반드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권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1)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이 다닐 자격이 있는 학교들의 선택 범위, (2) **노숙자** 학생은 **노숙자**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음, (3) 노숙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노숙 아동은 Charter School 직원에 의해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e)(3)(C).)

## 연간 정책 검토

Charter School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식별 또는 Charter School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 등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매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할 때 교통, 예방 접종, 거주, 출생 증명서, 학교 기록 및 기타 문서, 후견인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식별, 등록 및 출석을 확인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학교 웹사이트 게시

Charter School은 다음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들)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가 연락 담당자의 임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의 연락처 정보.
- 노숙을 경험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 및 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